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31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임 오경의원안)	3
2.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임오경 의원안)	8

I. 개요

1.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3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6.
- (3) 회 부 일 : 2024. 1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임오경의원안)

현행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의3) ○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 토지의 토지매수청구·협의매수를 통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의3제1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의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의3제2항) - 감면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		□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 (현행과 같음)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 포함)													
<table><tr><th>구분</th><th>감면율</th></tr><tr><td>○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td><td>40%</td></tr><tr><td>○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td><td>25%</td></tr></table>		구분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4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25%	<table><tr><th>구분</th><th>감면율</th></tr><tr><td>○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td><td>40%</td></tr><tr><td>○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td><td>25%</td></tr></table>		구분	감면율	○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	40%	○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	25%
구분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4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25%														
구분	감면율														
○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	40%														
○ ‘해당 토지등’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	25%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임오경의원안 2024. 11. 6. 발의(의안번호 5312)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시 양도소득세 4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 취득시 25%)를 감면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¹⁾는 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던 광명·시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명·시흥지구가 유일함.
 - 2010년 이전 그린벨트²⁾→ 2010년 5월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 지정→ 2015년 4월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³⁾로 지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대도시 외곽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광명·시흥지구도 1971년 7월에 그린벨트로 지정

3)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1,271만㎡(384만평)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

□ 「공공주택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됨.

□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동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으나, 2015년 공공주택지구로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것에 대해 일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2010년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의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25% 또는 4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임.⁵⁾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축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40%(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25%(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현행법⁶⁾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1. 3. 16., 2022. 12. 31.>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 14., 2015. 8. 28.,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2025. 3. 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은 20%(「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3년만기보유는 35%, 5년만기보유는 45%)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둘째, 현행법상 특별관리지역이 당초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던 광명·시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고, 현존하는 특별관리지역도 광명·시흥지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 (임오경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에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배제 · 과세기간별 16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1억원</u> 초과분(제1호) * 16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33조·제43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3·제69조의4·제70조·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제77조의3·제85조의10·조특법 개정법률 제6583호 부칙 제29조 [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제77조의3는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u>2억원</u>으로 상향 조정됨] · 5개 과세기간 농지대토 감면액(제70조)의 1억원 초과분(제2호가목) · 5개 과세기간 11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2억원</u> 초과분(제2호나목) * 11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3·제69조의4·제70조·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 * [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제77조의3는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u>3억원</u>으로 상향 조정됨]	□ 종합한도 상향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에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배제 · 과세기간별 16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2억원</u> 초과분(제1호) · (현행과 같음) · 5개 과세기간 11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4억원</u> 초과분(제2호나목) ○ 시행일: 2025. 1. 1.

* 임오경의원안 2024. 11. 6. 발의(의안번호 5312)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자산이 아니

라 인별로 계산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제133조에 열거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는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제13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와 5년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함

□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작은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1억원→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2억원(2억원→4억원)을 인상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 등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늘리고, 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각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해 각 조세특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 받는 조세특례 제도의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에 따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 일반적인 토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둘째, 2025년 2월 세법개정⁷⁾을 통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한도가 과세기간별로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3억원으로 각 1억원씩 상향되었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임.

7)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20. 6. 9., 2025. 3. 14.>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 <2017. 12. 19.>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25. 3. 14.>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

구 분	감면유형	과세 기간 한도	5년간 합계액 한도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합계 1억원	1억원
제66조	영농조합 현물출자 감면		합계 2억원
제67조	영어조합 등 현물출자 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감면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		×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금·일반채권)	합계 2억원	합계 3억원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3년·5년 만기 채권)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감면		

문 의 처

02)6788-5148